



국가대표 지도자 공개 채용 공고

리듬체조(개인) 코치



사단법인 대한체조협회에서는 국가대표 지도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채용 하오니 역량 있고 유능한 지도자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 리듬체조 개인부문 코치 1명

2. 계약조건

가. 계약기간: 2024. 10.(채용월일)~계약일로부터 2년

※ 단, 아래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경기력향상위원회 평가 결과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수당 미지원이 발생하는 경우
- 본인의 귀책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나. 계약형태: ① 근로계약(무직장 지도자) ② 용역계약(유직장 지도자)

다. 계약조건

- 근무지: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입촌 합숙훈련) 및 대한체조협회 지정 장소
- 계약금액: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수당지급 기준에 의거함
- 주요업무: 선수단 강화훈련 및 경기력향상 업무, 선수단 국제대회 파견 업무, 선수단 관리 업무, 기타 지시/부여 업무 등

3. 자격요건

가. 대한체조협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5조에 해당하는 자

제5조(국가대표 지도자의 자격) ① 국가대표 지도자는 협회의 지도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선발 당시 지도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한시적으로 협회의 소속 지도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 코치

③ 국가대표 지도자 중 코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체조종목 경기 지도경력 2년 이상과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체조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지만 체육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체조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체조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미만이지만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안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체조종목의 2급 이상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체조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미만이지만 2년 이상 체육회 강화훈련 경력,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출전 경력과 체조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5. 외국인인 2년 이상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경력 또는 2년 이상의 체조 종목 지도경력 있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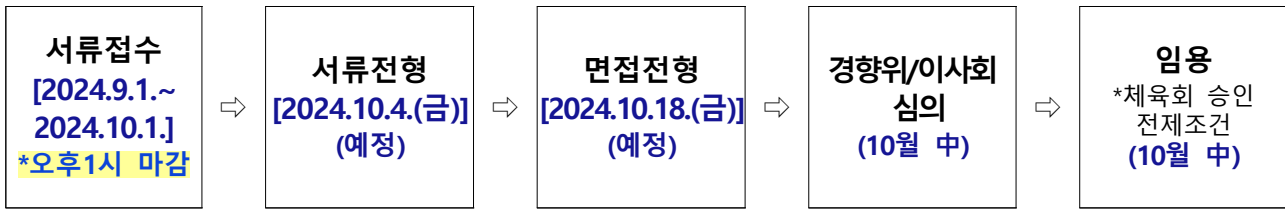
나.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대표, 트레이너, 경기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4.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5.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6.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 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7.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 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8. 체육회 관계단체 등에서 승부조작,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훈련비 횡령, 배임, 강간·강제추행 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9.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나.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도박과 관련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가. 1천만원 초과인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나. 1천만원 이하인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12.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징계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4.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선발 전형 절차 및 방법

가. 전형 절차



※추진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 변동 가능

나. 전형 방법

- 서류전형(1차) 및 면접전형(2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을 통하여 선임하며, 면접대상자 및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 예정임
- 서류전형: 자격요건 검토 및 정량평가
- 면접전형: 개인별 국가대표 선수단 운영계획서 30분 이내 발표
 - 리듬체조(개인): 2024. 10. 18.(금) / 예정

다. 전형배점: 총 100점 ※ 붙임: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전형)기준 참조

전형 구분	합계	세부 평가 기준	세부 배점
정량평가	40점	경기실적	15점
		지도실적	20점
		자격사항	5점
정성평가	60점	훈련계획서	40점
		자질, 인성 등	20점
합 계	100점		

※ 전형배점 합산점수 60점 이상 득점자를 대상으로 선발

5. 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 가. 접수기간: 2024. 9. 1.(일)~2024. 10. 1.(화) 오후 1시 ※ 마감시한 이후 접수 불가
- 나. 접수마감: 2024. 10. 1.(화) 오후 1시 도착분에 한함
- 다.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제출처: gymnastics@sports.or.kr)

6. 제출서류

- 가. 지원서 1부 (별첨1 양식)
- 나. 자기소개서 1부 (별첨1 양식)
- 다. 국가대표 선수단 운영계획서 1부 (별첨1 양식)
- 라. 확인서(범죄사실증명) 1부 (별첨1 양식)
-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첨1 양식)
-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사.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
- 아. 경기실적증명서 1부
- 자. 지도실적증명서 1부
- 차. 관련 자격증 및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카. 채용신체검사서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 타. 스포츠윤리센터 발행 징계유무확인서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7. 기타(유의)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다.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는 합격(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마. 관련 문의사항은 대한체조협회 사무처(02-420-4266/내선3번)로 연락바랍니다.

2024. 9. 1.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전형)기준

1. 심사기준

가. 총 평가점수(단위: 점수)

구 분	정량평가	정성평가	계
코치(리듬)	40	60	100

나. 세부 배점비율

정량평가(40점)				정성평가(60점)			계
경기실적	지도실적	자격사항	소계	훈련계획서	자질, 인성 등	소계	
15	20	5	40	40	20	60	100점

2. 정량 평가표

가. 경기실적(15점): 경기실적증명서를 근거로 최상위 대회 1개의 점수 적용

구 분	세 부 내 용	
	입상선수	출전선수
A(15점)	-올림픽대회	-해당없음
B(13점)	-세계선수권대회	-해당없음
C(11점)	-아시아경기대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올림픽대회
D(9점)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시아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E(7점)	-기타 국제대회(10개국 이상 참가/주니어 대회) 입상선수 또는 국가대표선수 경력 3년 이상인 자	
F(5점)	-국가대표선수 경력 3년 미만인 자 또는 본 협회 국내대회 3회 이상 입상인 자	

나. 지도실적(20점): 해당 지도기간 중 최상위 입상선수의 실적 1개 점수 적용 원칙

구 분	세 부 내 용	
	소속 지도자	배출 지도자
A(20점)	-올림픽대회 입상선수	-해당없음
B(18점)	-세계선수권대회 입상선수	-올림픽대회 입상선수
C(16점)	-아시아경기대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입상선수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선수	-세계선수권대회 입상선수
D(14점)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시아대회 입상선수 -아시아경기대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출전선수 -국가대표선수 경력 8년 이상인 자	-아시아경기대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입상선수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선수
E(12점)	-국가대표선수 -기타 국제대회(10개국 이상 참가/주니어 대회) 입상선수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시아대회 입상선수 -아시아경기대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출전선수 -국가대표선수 경력 8년 이상인 자
F(10점)	-전국대회 입상실적이 3회 이상인 선수	-국가대표선수 -기타 국제대회(10개국 이상 참가/주니어 대회) 입상선수

※ 국가대표 지도자 지도실적은 소속 지도자 배점으로 적용

다. 자격사항(5점)

구 분	세 부 내 용	
	감 독	코 치
A(5점)	-체조종목 경기 지도경력 5년 이상 및 체조종목 전문스포츠지도자 2급 이상 소지자	-체조종목 경기 지도경력 2년 이상 및 체조종목 전문스포츠지도자 2급 이상 소지자
B(4점)	-체조종목 경기 지도경력 4년 이상 5년 미만 및 체육관련 학사 박사 학위 취득자 및 체조종목 전문스포츠지도자 2급 이상 소지자	-체조종목 경기 지도자경력 1년 이상 2년 미만 및 체육관련 학사 박사 학위 취득자 및 체조종목 전문스포츠지도자 2급 이상 소지자
C(3점)	-체조종목 경기 지도경력 2년 이상 5년 미만 및 2년 이상 국가대표 선수 경력 및 체조종목 전문스포츠지도자 2급 이상 소지자	-체조종목 경기 지도경력 1년 미만 및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입상자 및 체조종목 전문스포츠지도자 2급 이상 소지자
D(2점)	-체조종목 경기 지도경력 1년 이상 5년 미만 및 올림픽대회와 아시아경기대회 입상자 및 체조종목 전문스포츠지도자 2급 이상 소지자	-체조종목 경기 지도경력 1년 미만 및 2년 이상 체육회 강화훈련 경력 및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출전 경력 및 체조종목 전문스포츠지도자 2급 이상 소지자

3. 정성평가

가. 훈련계획서 평가(40점)

- 훈련계획서 내용의 체계적 구성
- 계획의 타당성
- 계획의 논리성
- 최근 체조 흐름의 경향 반영 여부

나. 자질, 인성 등 평가(20점)

- 인성 및 가치관
- 지도철학 및 국가관
- 전문지식 및 발전계획
- 리더십